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20년 5월 15일

신한BNPP삼성전자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집합투자계약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투자대상(파생상품) 삭제
- 2 어음투자등급 변경
- 3 집합투자증권 정의 변경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투자대상(파생상품) 삭제, 2. 어음 투자등급 변경, 3. 집합투자증권 등 정의 변경 :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p>	<p>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p> <p>① <생략></p> <p>1. ~ 3. <생략></p> <p>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어음 등" 이라 한다)</p> <p>5. 금리스왑거래</p>	<p>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어음 등" 이라 한다)</p> <p><삭제></p>
	<p>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다만 <신설> 국채, 통안채로 구성된 채권관련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지분증권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 이하 " 집합투자증권 등" 이라 한다)</p> <p>7.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이라 한다)</p> <p><이하 생략></p>	<p>5.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다만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한하며, 국채, 통안채로 구성된 채권관련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삭제>이하 " 집합투자증권 등" 이라 한다)</p> <p><삭제></p> <p><이하 현행과 같음></p>
<p>1. 투자대상(파생상품) 삭제 : 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p>	<p>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p> <p>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p>1. ~4. <생략></p> <p>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무 증권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무 증권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p> <p>6. ~ 9. <생략></p> <p>10.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로 한다.</p>	<p>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p> <p>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5. ~ 8. <현행과 같음></p> <p><삭제></p>
<p>1. 투자대상(파생상품) 삭제 : 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p>	<p>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p> <p>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이하 생략></p>	<p>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p> <p>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6호 내지 제8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이하 현행과 같음></p>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투자대상(파생상품) 삭제
- 2 어음투자등급 변경
- 3 집합투자증권 등 정의 변경
- 4 부채임용전문인력 변경
- 5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6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투자대상(파생상품) 삭제, 2. 어음투자등급 변경, 3. 집합투자증권 등 정의 변경: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가. 투자대상</p>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p> <p>1. ~ 3. <생략></p> <p>4. 어음 등: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p> <p>가. 투자대상</p>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p> <p>1. ~ 3. <생략></p> <p>4. 어음 등: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만, 이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p>
1. 투자대상(파생상품) 삭제, 2. 어음투자등급 변경, 3. 집합투자증권 등 정의 변경: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계속>	<p>5.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무증권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채무증권 총액의 100% 이하.</p> <p>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다만 <신설> 국제, 통안채로 구성된 채권관련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지분증권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 이하 "집합투자증권 등" 이라 한다)</p> <p>7.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p> <p>8. ~ 12. <생략></p> <p>파생상품(금리스왑거래 등 포함)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로 한다.</p>	<p><삭제></p> <p>5.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다만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한하며, 국제, 통안채로 구성된 채권관련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삭제>이하 " 집합투자증권 등" 이라 한다</p> <p><삭제></p> <p>6.~ 10. <현행과 같음></p> <p><삭제></p>
1. 투자대상(파생상품) 삭제, 2. 어음투자등급 변경, 3. 집합투자증권 등 정의 변경: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계속>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 [2], [3], [4], [5], [6]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p> <p>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p> <p>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p> <p>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마. 투자신탁재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1], [2], [3], [4], [5], [6]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 [2], [3], [4], [5], <삭제>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p> <p>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p> <p>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p> <p>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마. 투자신탁재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1], [2], [3], [4], [5], <삭제>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1. 투자대상(파생상품) 삭제: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p>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p> <p>(2) 상세 투자전략</p> <p>2) 채권 운용전략</p> <p>듀레이션 전략</p> <p>만기 간 상대가치를 비교, 특정 만기구간 저평가 심화 시 포트폴리오 인컴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헤지 전략 병행</p>	<p>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p> <p>(2) 상세 투자전략</p> <p>2) 채권 운용전략</p> <p>듀레이션 전략</p> <p><삭제></p>

<p>1. 투자대상(파생상품) 삭제: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p>	<p>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삭제></p>
<p>4.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 5. 운용전문인력의 운용 규모 업데이트: 제2부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책임운용역: 김재정, 정성한 부책임운용역: 이유라, 서보민</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책임운용역: 김재정, 정성한 부책임운용역: 이유라, 없음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0년 04월 30일)</p>
<p>6.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0년 04월 30일)</p>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2 투자대상(파생상품) 삭제
- 3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3.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p>	<p>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김재정, 정성한 부책임운용역: 이유라, 서보민</p>	<p>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김재정, 정성한 부책임운용역: 이유라, 없음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0년 4월 30일)</p>
<p>2. 투자대상(파생상품) 삭제: [요약정보] 주요 투자위험</p>	<p>주요 투자 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p>	<p>주요 투자 위험 <삭제></p>